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817

발의연월일: 2024. 8. 14.

발 의 자:서지영·안상훈·조승환

최은석 • 이헌승 • 정성국

성일종 · 김대식 · 곽규택

김선교 • 서일준 • 김승수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국·공립유치원과 원아 5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을 학교 급식 대상인 유치원으로 규정하고, 국·공립유치원과 원아 100명 이상 사립유치원에 영양교사를 1명 이상 두도록 하며, 원아 50명 이상 100명 미만인 사립유치원에 대하여는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두는 영양교사가 급식관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급식을 운영하면서, 영양교사가 상주하지 않는 원아 50명 이상 100명 미만인 사립유치원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운영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중복지도·감독 대상이 되어, 교육청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중복지도·감독을 받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 소속 영양교사를 통해 급식지원을 받는 유치원은 이 법에 따라 영양교사를 둔 것으로 보아 교육청으로 지

도·감독 및 급식관리의 권한을 일원화함으로써 유치원 운영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4항 신설).

법률 제 호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영양교사가 급식관리를 지원하는 유치원의 경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영양교사를 둔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영양교사의	배치	등)	1	제7조(영양교사의 배치 등) ①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④ 제3항에 따라 영양교사가
				급식관리를 지원하는 유치원의
				경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
				라 영양교사를 둔 것으로 본다.
<u>④</u> (생 략)				<u>⑤</u> (현행 제4항과 같음)